

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2023. 11. 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의 목적,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)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,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위임근거 및 취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2조)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사항으로,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(내용 참고)내에서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,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[참고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

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(제61조 관련)

항 목	등 록 기 준
1. 등록기준 대수	가.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: 50대 이상 나. <u>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 소재하고,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: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</u>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